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0. 2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10월 12일

나. 발 의 자 : 이용주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2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용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제4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예우하고 구민들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안 제6조와 관련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가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심사·검토 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는 854개 가문이 선정되었고 그 중 신청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639개 가문이, 영등포구는 37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음.
-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으나 병역명문가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 월 일

발 의 자 : 이용주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0. 11. ~ 10. 16.):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 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